

2019년도 제2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7.(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00건(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83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838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1,900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43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 이용자가 만화복제물(만화를 캡처한 jpg.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이 보호원의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게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직접 수집한 것임.

누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URL 주소를 신고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 목록화면, 전송화면, 실행화면 등을 등록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3408호의 복제·전송자는 이미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바가 있음. “저는 게임/만화/영화를 업로드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쪽지를 주세요”, “검색창에 검색해주시면 더 많은 만화들이 장르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라는 표현과 본 건 복제·전송자가 웹하드에 업로드 한 복제물 목록을 보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음. 즉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439호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439호는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웹하드 이용자가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마땅함.
- D 위원 : 이견이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43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3440호~143838호는 모두 불법복제된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3470호는 웹하드에서 2019. 8. 21. 개봉한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138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 D 위원 : 1포인트 당 약 1원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대체로 그러함.

(방송 '모두의 거짓말(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43476호는 OCN 채널에서 2019. 10. 12.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음악 '만약에 (가수: 태연(TAEYEON))'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619호의 음원파일은 2008. 1. 23. 발매된 곡으로 '꽤도 흥길동 OST (KBS 드라마)' 앨범에 수록되어 있음. 얼마 전 방영된 '비긴어게인 3'에서 해당 곡이 소개되면서 음원파일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97개의 대중가요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출판 '도굴왕 (출판: 뉴에피소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620호는 어문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밴드에서 불법 txt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6,564명임.

- B 위원 : 'txt'는 스캔본이 아닌 텍스트 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러함.

(만화 '도우미 여우 센코 씨 (출판 : 소미미디어)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822호는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 전권은 약 15,200원에 판매 중임.

(게임 'Dusk Diver'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829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에 발매된 최신 컴퓨터프로그램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3,8000원에 판매 중임.

- D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목록에서 웹하드와 모바일웹하드 의 차이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할 때 모바일용 웹하드와 PC용 웹하드를 구분하고 있음.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가 PC용 웹하드에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면 모바일용 웹하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인코딩(encoding)을 거친 후 모바일용 웹하드에 다시 업로드됨. 모바일용 웹하드에서는 보통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는데, PC용 웹하드의 복제물과는 해상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다시 말해, PC용 웹하드와 모바일용의 웹하드의 저장 위치 및 접속 경로가 상이하야 PC용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이 삭제되더라도 모바일용 웹하드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음.

중앙전파관리소도 동일한 웹하드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PC용 웹하드와 모바일용 웹하드를 별도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url 주소와 같은 불법복제물등의 위치 정보가 특징이 되어야 하는데, 모바일용 웹하드와 PC용 웹하드의 게시물 주소가 다름.

이러한 이유로 보호원은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모바일용 웹하드와 PC용 웹하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데드카피인 안건번호 제2019-143440호~1438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

당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3440호~14383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3408호~14383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4.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